

24.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정관

자료제공 : 주택공제조합

본 정관은 주택공제조합 제17차 임시총회('99. 6. 1)에서 의결한 대한주택보증주식 회사의 정관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주관 58510-2584, '99. 6. 2)를 받은 것임.

<편집자주>

제 1장 총 칙

제1조(설립근거 및 명칭) ①이 회사는 주택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7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다.

②이 회사는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라 하며, 영문으로는 Korea Housing Guarantee Co., Ltd.(약호 KHGC)라 표기한다.

제2조(목적) 이 회사는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각종 보증등을 행함으로써 주택분양계약자 및 입주자를 보호하고, 주택건설사업자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지원하여 주택건설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등의 설치) ①이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에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등의 영업소와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일간 대한매일 및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5조(정관의 변경) 이 회사의 정관변경은 주주총회에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이상의 수로써 결의(이하 “특별결의”라 한다)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등기) 이 회사는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상법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제 2 장 주 식

제7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6억7천8백만주로 한다.

제8조(1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

제9조(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1억6천9백6십만2천8백주로 한다.

제10조(주식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하고, 주식의 발행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11조(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①이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내로 한다.

②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최저 낸 11%이상으로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율을 정한다.

③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삼가시켜 배당한다.

④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⑤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의 다음 주주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⑥이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에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⑦우선주식의 존립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년이상 10년이내의 범위에서 발행시 이사회의 의결로써 정하고, 이 기간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에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주권의 종류등) ①이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②이 회사는 주주의 청구에 의하여 주권의 분할 또는 병합을 할 수 있다.

③주주의 주권부소지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뜻을 주주명부와 그 복본에 기재하고 그가 소유하는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

제13조(신주인수권) ①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은 권리를 가진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경영상 필요 또는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가,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주택건설사업자 등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③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14조(신주의 배당기산일) 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5조(명의개서대리인) ①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②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③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다.

④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⑤회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에 관한 제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각 주주로부터 이사회가 정한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16조(주주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①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등을 제15조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제17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이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에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사는 그 기간 또는 그 날의 2주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이 정지되거나 기준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기재변경이 정지된 기간의 전일 또는 기준일에 최종적으로 기재된 자를 당해 사항에 관하여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본다.

제 3장 사 채

제18조(전환사채의 발행) ①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3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주 및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 ③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다.
- ④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익일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 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⑤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3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주 및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③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다.

④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익일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 까지로 한다. 다만,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의결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 4장 주주총회

제21조(주주총회의 의결사항) 주주총회는 상법 또는 이 정관이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의결한다.

제22조(소집시기 및 소집지) ①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정기주주총회는 매결산기 종료후 3월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③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3조(소집권자) ①주주총회의 소집은 관계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사장이 소집한다.

②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3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4조(소집통지)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의 2주간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의장) ①주주총회의 의장은 사장으로 한다.

②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3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의장의 질서유지권) ①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행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7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8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제한) 이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29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2개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주주총회의 의결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관계법령 및 이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32조(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에서 보존하고, 그 사본을 지점등의 영업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5장 이사 · 이사회 · 감사

제33조(이사 및 감사의 수) 이 회사는 임원으로 사장 1인을 포함하여 상임이사 4인 이내, 비상임이사 7인 이내와 감사 1인을 둔다.

제34조(사장, 이사 및 감사의 선임) ① 사장은 상임이사중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상임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되 감사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사와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구분하여 결의하여야 한다.

③ 이사와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의 본인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그 특수관계인, 본인,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본인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 비상임이사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지명 또는 위촉된 자로 한다.

1. 건설교통부장관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2. 건설교통부장관이 법률전문가, 회계전문가 및 주택관계전문가중에서 위촉하는 자 1인
3. 법 제4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택사업자단체장이 위촉하는 자 3인
4. 직전 결산기의 최종일 현재 출자금융기관중 보유주식의 수가 많은 상위 2개 금융기관

의 장이 금융전문가증에 위촉하는 자 2인

제35조(이사 및 감사의 임기) ①상임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비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다만,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후 해당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임기를 연장한다.

②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종결시까지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③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하되, 그 임기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으로 한다.

제36조(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회사에 대한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손해를 끼친 자

②이 회사의 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37조(이사의 직무) ①사장은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상임이사는 사장을 보좌하고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담·집행하며, 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미리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상임이사중에서 부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를 위임할 수 있다.

제38조(이사의 보고의무)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비상임이사의 성실의무) 비상임이사는 회기일에 이사회에 참석하는 등 비상임이사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0조(이사의 책임) ①이사가 관계법령 또는 이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제1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③ 제1항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41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며,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전술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42조(감사의 감사록) 감사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감사록에 기재하고 이에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43조(감사의 책임) ① 감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감사는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감사가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이사도 그 책임이 있는 때에는 그 감사와 이사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44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회사의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③ 이사회는 사장이 이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다만, 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3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이사 3분의 1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의일시를 정하여 그 회일의 3일전까지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재직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46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에 비치한다.

제47조(상임이사회) ①상임이사회는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②상임이사회는 이 회사업무의 중요사항중 이사회로부터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을 결의한다.

③제44조제3항 · 제4항, 제45조 및 제46조는 상임이사회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8조(위원회등) ①이 회사는 보증심사 또는 보증이행 등 주요사안을 독립적으로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이 회사는 회사의 정관 및 제규정등을 제 · 개정하기 전에 의견수렴 및 검토를 위하여 정부 · 주택건설사업자 및 회사 등의 실무대표로 구성하는 실무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 한다.

제49조(임원의 보수등) ①상임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이 경우에 상임이사와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은 구분하여 결의하여야 한다.

②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따로 정하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③비상임이사는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이사회에 출석한 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0조(고문 및 자문위원)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2인이내의 고문 또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 6장 사업

제51조(사업) ①이 회사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보증

 가. 주택분양보증

 나. 주택임대보증

 다. 하자보수보증

- 라. 감리비보증
 - 마. 인·허가보증
 - 바. 주택구입자금보증(입주예정자를 차주로 하는 대출에 한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이행을 위한 주택의 건설 및 하자보수 등
 - 3.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등이 위탁하는 업무
 - 4. 기타
 - 가.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자금의 융자(종전의 주택사업공제조합이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대출한 융자금의 기한연장에 한한다)
 - 나. 주택사업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행한 보증의 기한연장(대출보증의 경우 보증금액이 증가하지 않는 대환을 포함한다) 및 보증이행
 - 다. 조합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할 목적으로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토지의 개발을 위한 주택의 건설·공급·임대에 관한 사업
 - 라. 회사의 재산 및 기타 부대시설의 임대등 운영·관리
-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의 대상·범위 및 이행방법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52조(보증의 한도) ①이 회사가 행할 수 있는 보증의 총한도는 회사의 자기자본의 30배로 한다.

② 보증종류별 및 피보증인별 보증한도는 제1항의 총보증한도 범위내에서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③이 회사가 상당한 담보를 제공받고 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한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3조(신용조사 및 보증심사) 이 회사는 제5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을 하는 경우에 보증신청인에 대한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4조(보증료등) ①이 회사는 회사업무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증료 및 융자금이자등의 이용대가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율, 융자금이자율, 징수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 결의를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율 및 융자금이자율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5조(업무의 위탁)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그 업무의 일부를 금융기관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상당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56조(규정의 제정) 이 회사의 운영 및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중 이 정관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 7장 계 산

제57조(사업년도) 이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매 사업년도의 미일을 결산일로 한다.

제58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 ①이 회사의 사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정기주주총회 금일의 6주간전에 다음 명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현금흐름표
5. 연결재무제표

②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2주간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장은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1항제5호의 연결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사장은 제1항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⑤사장은 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9조(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회계년도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 각호와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60조(자금의 운용) 이 회사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국채 또는 지방채와 국가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2. 금융기관이 발행한 금융채권의 매입
3. 금융기관에의 예치
4.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로부터의 공사채형 수익증권의 매입
5.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로부터의 공사채형 수익증권의 매입
6. 금융기관이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회사채의 매입

제61조(이익배당) ①이익의 배당은 이사회에 의하여 정기주주총회에 결정하며, 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에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62조(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제63조(다른 기관에 대한 출자) 회사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주택산업연구원에 대하여 출연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이 회사로 전환하여 설립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산과 권리 · 의무의 승계) ①회사 설립당시의 조합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 · 의무는 회사가 이를 포괄승계한다.

②조합의 정관에 의하여 행하여진 모든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관계법령 또는 이 정관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얻도록 한 사항은 그 결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제3조(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회사의 설립일 현재 시행중인 조합의 규정은 이를 회사의 규정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규정중 관계법령 및 이 정관에 저촉되는 조항은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③사장은 이 회사의 설립후 1월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규정을 정비 · 보완하여야 한다.

제4조(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회사의 설립당시 조합의 이사장, 이사(전무이사를 포함한다) 및 감사는 각각 회사의 사장, 상임이사 및 감사로 본다.

② 이 회사의 설립이후 최초로 선임하는 비상임이사중 제34조제4항제4호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비상임이사는 동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출자금납입일 현재 출자금액이 많은 상위 2개 금융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제5조(보증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한도를 계산함에 있어서 조합이 행한 보증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제6조(최초 주주총회의 주주명부폐쇄기준일) 이 회사의 설립후 최초의 주주총회시에 주주권을 행사할 주주는 이 정관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9년 6월 12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로 한다.

제7조(사업년도) ①회사는 조합의 사업을 승계하여 그에 연속하여 사업을 영위한다.

②회사의 제7기 사업년도는 1999년중 조합으로서의 사업기간을 포함한다.

주택회보